

이창한 / 5월+6월 / 기초GS / 1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항 총점	석차	상위%	응시인원
561320	18.5	11	29.5	1	0.44%	229
561886	18.5	10.5	29	2	0.87%	
561105	16.5	12	28.5	3	1.31%	
563420	16.5	12	28.5	3	1.31%	
563057	17	11	28	5	2.18%	
563314	18	10	28	5	2.18%	
561290	16.5	11	27.5	7	3.06%	
561360	17	10.5	27.5	7	3.06%	
562534	16	11	27	9	3.93%	
556205	16	10.5	26.5	10	4.37%	
556412	15.5	11	26.5	10	4.37%	
561293	15.5	11	26.5	10	4.37%	
561903	16.5	10	26.5	10	4.37%	
561907	20	6.5	26.5	10	4.37%	
561938	16	10.5	26.5	10	4.37%	
561939	16.5	10	26.5	10	4.37%	
562184	17.5	9	26.5	10	4.37%	
556423	14	12	26	18	7.86%	
561120	14.5	11.5	26	18	7.86%	
562648	14	12	26	18	7.86%	
556358	13.5	12	25.5	21	9.17%	
561154	13.5	12	25.5	21	9.17%	
561894	15.5	10	25.5	21	9.17%	
561947	14.5	11	25.5	21	9.17%	
563331	14.5	11	25.5	21	9.17%	
563358	15	10.5	25.5	21	9.17%	
561930	13.5	11.5	25	27	11.79%	
561931	16.5	8.5	25	27	11.79%	
556416	15.5	9.5	25	27	11.79%	
562288	14.5	10.5	25	27	11.79%	
556213	14.5	10	24.5	31	13.54%	
561148	15.5	9	24.5	31	13.54%	
561288	15.5	9	24.5	31	13.54%	
561897	13.5	11	24.5	31	13.54%	
562263	17	7.5	24.5	31	13.54%	
556232	14.5	10	24.5	31	13.54%	
562390	14	10.5	24.5	31	13.54%	
559375	14	10	24	38	16.59%	
561132	15.5	8.5	24	38	16.59%	
561933	15	9	24	38	16.59%	
561941	16.5	7.5	24	38	16.59%	
562190	13	11	24	38	16.59%	

562211	14	10	24	38	16.59%
556399	12	11.5	23.5	44	19.21%
561214	14.5	9	23.5	44	19.21%
561256	13	10.5	23.5	44	19.21%
561910	13.5	10	23.5	44	19.21%
561912	14.5	9	23.5	44	19.21%
561914	15.5	8	23.5	44	19.21%
564307	16.5	7	23.5	44	19.21%
563058	17	6.5	23.5	44	19.21%
563359	13.5	10	23.5	44	19.21%
561137	15.5	7.5	23	53	23.14%
561278	13.5	9.5	23	53	23.14%
561298	12.5	10.5	23	53	23.14%
561893	15.5	7.5	23	53	23.14%
561911	13	10	23	53	23.14%
562217	13	10	23	53	23.14%
563558	13.5	9.5	23	53	23.14%
556282	13.5	9	22.5	60	26.20%
556479	14	8.5	22.5	60	26.20%
559826	13	9.5	22.5	60	26.20%
561234	14	8.5	22.5	60	26.20%
561898	14.5	8	22.5	60	26.20%
562590	12	10.5	22.5	60	26.20%
562692	14.5	8	22.5	60	26.20%
563064	14	8.5	22.5	60	26.20%
563426	14.5	8	22.5	60	26.20%
562198	16.5	6	22.5	60	26.20%
563440	13.5	9	22.5	60	26.20%
556214	12.5	9.5	22	71	31.00%
556236	15.5	6.5	22	71	31.00%
561235	15	7	22	71	31.00%
562262	13.5	8.5	22	71	31.00%
561173	13	8.5	21.5	75	32.75%
561253	12.5	9	21.5	75	32.75%
561260	13	8.5	21.5	75	32.75%
561934	14.5	7	21.5	75	32.75%
561935	11.5	10	21.5	75	32.75%
561942	13	8.5	21.5	75	32.75%
562938	14.5	7	21.5	75	32.75%
563311	13	8.5	21.5	75	32.75%
563486	15	6.5	21.5	75	32.75%
565516	16	5.5	21.5	75	32.75%
556312	12	9	21	85	37.12%
559560	14.5	6.5	21	85	37.12%
561218	9	12	21	85	37.12%

561238	15.5	5.5	21	85	37.12%
561276	14	7	21	85	37.12%
561349	14.5	6.5	21	85	37.12%
561402	8.5	12.5	21	85	37.12%
561918	14.5	6.5	21	85	37.12%
561919	14	7	21	85	37.12%
561937	14.5	6.5	21	85	37.12%
562009	13	8	21	85	37.12%
562164	14.5	6.5	21	85	37.12%
563299	11.5	9.5	21	85	37.12%
563401	15.5	5.5	21	85	37.12%
556203	12	8.5	20.5	99	43.23%
561094	13	7.5	20.5	99	43.23%
561129	13.5	7	20.5	99	43.23%
561258	11	9.5	20.5	99	43.23%
561283	10.5	10	20.5	99	43.23%
561885	13	7.5	20.5	99	43.23%
561936	13.5	7	20.5	99	43.23%
561960	15	5.5	20.5	99	43.23%
563342	8.5	12	20.5	99	43.23%
556337	13.5	7	20.5	99	43.23%
562840	13	7.5	20.5	99	43.23%
561149	14	6	20	110	48.03%
561170	16	4	20	110	48.03%
561259	12	8	20	110	48.03%
561270	15.5	4.5	20	110	48.03%
561284	8.5	11.5	20	110	48.03%
561895	14.5	5.5	20	110	48.03%
561915	12.5	7.5	20	110	48.03%
563185	11.5	8.5	20	110	48.03%
556448	14	6	20	110	48.03%
556383	15	4.5	19.5	119	51.97%
561217	11.5	8	19.5	119	51.97%
561229	12	7.5	19.5	119	51.97%
561317	11	8.5	19.5	119	51.97%
561896	11.5	8	19.5	119	51.97%
561900	12	7.5	19.5	119	51.97%
562975	12	7.5	19.5	119	51.97%
563462	14.5	5	19.5	119	51.97%
556500	13	6.5	19.5	119	51.97%
562889	14.5	5	19.5	119	51.97%
563448	13.5	6	19.5	119	51.97%
563532	12.5	7	19.5	119	51.97%
556305	12.5	6.5	19	131	57.21%
561169	11.5	7.5	19	131	57.21%

561271	13	6	19	131	57.21%
561902	14.5	4.5	19	131	57.21%
561950	15	4	19	131	57.21%
562349	13	6	19	131	57.21%
563268	12	7	19	131	57.21%
562207	12.5	6.5	19	131	57.21%
563165	13.5	5.5	19	131	57.21%
563494	12.5	6.5	19	131	57.21%
563508	19	0	19	131	57.21%
561090	15.5	3	18.5	142	62.01%
561373	11	7.5	18.5	142	62.01%
561908	9.5	9	18.5	142	62.01%
561913	11.5	7	18.5	142	62.01%
562161	12.5	6	18.5	142	62.01%
562255	11.5	7	18.5	142	62.01%
562449	16.5	2	18.5	142	62.01%
556360	13.5	4.5	18	149	65.07%
561118	13.5	4.5	18	149	65.07%
561891	11.5	6.5	18	149	65.07%
561943	10.5	7.5	18	149	65.07%
562006	11.5	6.5	18	149	65.07%
562192	11	7	18	149	65.07%
562284	16.5	1.5	18	149	65.07%
563334	13	5	18	149	65.07%
563571	10	8	18	149	65.07%
556219	14	3.5	17.5	158	69.00%
556397	11.5	6	17.5	158	69.00%
556409	14	3.5	17.5	158	69.00%
561097	9.5	8	17.5	158	69.00%
561163	10	7.5	17.5	158	69.00%
561165	9.5	8	17.5	158	69.00%
561171	15.5	2	17.5	158	69.00%
561175	13.5	4	17.5	158	69.00%
561955	11.5	6	17.5	158	69.00%
556382	10.5	6.5	17	167	72.93%
556809	9.5	7.5	17	167	72.93%
561098	17	0	17	167	72.93%
561103	15.5	1.5	17	167	72.93%
562289	11	6	17	167	72.93%
562623	13.5	3.5	17	167	72.93%
561114	15	1.5	16.5	173	75.55%
561904	12.5	4	16.5	173	75.55%
561995	11	5.5	16.5	173	75.55%
563560	14.5	2	16.5	173	75.55%
556368	13	3	16	177	77.29%

556434	10	6	16	177	77.29%
557682	9	7	16	177	77.29%
561203	11.5	4.5	16	177	77.29%
561281	16	0	16	177	77.29%
561944	9	7	16	177	77.29%
556298	8	7.5	15.5	183	79.91%
561419	9	6.5	15.5	183	79.91%
561887	10.5	5	15.5	183	79.91%
563382	7.5	8	15.5	183	79.91%
556302	11.5	4	15.5	183	79.91%
562233	15.5	0	15.5	183	79.91%
563373	10	5.5	15.5	183	79.91%
556499	10	5	15	190	82.97%
562783	9.5	5.5	15	190	82.97%
556411	8.5	6	14.5	192	83.84%
561121	14	0.5	14.5	192	83.84%
561302	9.5	5	14.5	192	83.84%
561888	11.5	3	14.5	192	83.84%
562191	12.5	2	14.5	192	83.84%
562852	14.5	0	14.5	192	83.84%
556376	8.5	5.5	14	198	86.46%
556377	9.5	4.5	14	198	86.46%
556408	10	4	14	198	86.46%
556483	8.5	5.5	14	198	86.46%
561905	11	3	14	198	86.46%
562503	9.5	4.5	14	198	86.46%
562854	10	4	14	198	86.46%
652759	9.5	4.5	14	198	86.46%
561264	10.5	3	13.5	206	89.96%
561929	10	3.5	13.5	206	89.96%
563179	9	4.5	13.5	206	89.96%
563252	13.5	0	13.5	206	89.96%
556373	13	0	13	210	91.70%
556430	12.5	0	12.5	211	92.14%
562540	12.5	0	12.5	211	92.14%
562993	7.5	5	12.5	211	92.14%
559611	11	1	12	214	93.45%
563482	9	3	12	214	93.45%
556443	8.5	3.5	12	214	93.45%
562816	11.5	0	11.5	217	94.76%
561113	10.5	0.5	11	218	95.20%
561134	8.5	2.5	11	218	95.20%
561289	11	0	11	218	95.20%
561294	8	3	11	218	95.20%
556301	10.5	0	10.5	222	96.94%

556272	7	3	10	223	97.38%
557152	6	4	10	223	97.38%
562251	6	3	9	225	98.25%
561889	6.5	2	8.5	226	98.69%
556311	5	0	5	227	99.13%
561892	4	0	4	228	99.56%
562622	0	0	0	229	100.00%

[문제-1]

I. 서론(1)

1. 행정쟁의 - 관청의 의미

1.5 관청은 자살권 보장인권을 침해받은 것으로서, 행정쟁의를 신청하면, 가부판정은 지방법원에 있고, 사물관할의 문제 심도 있지 않음으로, 판사관청이 문제된다. 또한, 무과 같이 체결한 관청행위가 판사에게도 효력이 미치지 않게 문제된다.

2. 행정관할권

(1) 보통재판역

1 판교 2과 3의 주소지인 ^{중앙}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제 23)

(2) 특별재판역

1 행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 183 (항) 따라서 원고는 2과 3이 공판하고 행정처분을 내세우는 공무원도 소장은 관할하는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다.

3. 관할행위의

(1) 관할행위의 의미

1 행정행위는 당사자 행위의 따라 생긴 관할이다 (제 293)

1 이은 당사자의 정의를 위해 인정된다.

(2) 관할법원의 원과 방식

1 2 권으로 제 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대해서 한 것 (제 293 1항, 제 312), 합의의 대상은 인정할 법률 관계로 특정할 것 (제 293 2항), 관할법원이 특정되었을 것, 기타 상항위조서의 원을 갖출 것 등이 있다. 이때, 합의는 1년으로 한도 있다. (동조 2항)

(3) 관할법원의 종류

1) 합의한 내용으로 관할의 변동

0.5 관할법원의 내용이 따라 관할이 변동된다. 즉 관할권이 갖된 법정이란도 합의로 관할권이 생긴다. 특히 전속적 관할을 하면 합의한 법원 외 법원의 법질관할권 소멸한다.

2) 관할법원의 종류의 주장은 범위.

0.5 관할법원의 종류는 당사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기타일반 제 1차는 합의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배정이라 한 연대채무자의 관할법원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공동채무자 된 경우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도 관할채권자가 의해 문턱에 관할권이 생길 수는 있다.

4. 특별채권과 일반채권

(1) 일반채권의 의미와 범위



1
 1) 하나의 소관 여러 개의 사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사무에
 관할권도 관할권이 생긴다 (제 252) 이는 소송정지나 재판정지
 위한 것이다

(2) 재판의 항소 (공소장)에 상대방의 잘못 여부

1) 불제정

1) 소송정지를 이유로 정지하는 전제다 같은 파기의
 관할권이 없는 법원을 이유로 불제정하는 전제가 있었다.

2) 1990년 개정법

2) 소송정지 또는 정지 의의가 여러 사람에게 공소되거나
 사실상 공소상 같은 원인을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
 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 52조 전문) 이는 관할권쟁취를
 인정했다 (제 252 조 2항).

5. 사안의 경우

(1) 관할권의 경우

0.5
 통원관 관할권이 의하면, 여러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인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무과 2이 항의는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무과 2이 항의는
 관할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따라서 무과 2이 항의는

(2) 관할권의 경우. **관할 개항장으로 규정.**

2과 후의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었고 제 52조 전문에



따라 甲과 乙 사이 불의 행위가 丙에게도 미친다.

(가) 결론

0.5

丙에게도 인과성이 있을 법원에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법원은 丙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8.5/15

~~1. 1997(2)~~

1. 1997(2)

1. 1997(2)

판결취소청구에 의한 이항 결정은 다른 원인에 의한 이항 결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심판이 제기되어도 안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이항신청이 없는 경우 불복(항고)할 수 당사자가 못한다.

2. 1997(1) - 불복

(1) 이항신청권 주체

판결취소청구에 의한 이항청구 기각결정 후 부기청구권 소권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취소를 이유로 하는 이항신청이 원심을 당나라 판결취소를 이유로 이항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원의 판결취소를 불복으로 의해 안다고 되어 부당으로 판정이다.

(2) 재판과 불복 처분

판례에 '법원은 * 이 이항신청에 대해 재판할 필요가 없고 판사 법원이 이 이항신청을 재판하다도 안다가 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를 재판해야 한다' 인 " 이항신청이



1.1 |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등록한 특허권은
이것도 해당"고 한다.

3. ~~특허~~ 특허

1.1 |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등록한 특허권은
이것도 해당"고 한다.

4. 검토

0.5 | 특허의 재항고를 검토할 때, 세 개는 항고의 불응
관련한 것만을 이항신청인 주장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사자 이항신청과 불응된 인정해야 한다.

5. 1항의 경우

0.5 | 특허의 재항고를 검토하지 않고 이미 대해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나, 판례는 "당사자에게 이항신청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항 항고심에서 항고의 이항신청 취지라도 재항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검토하였다. 5/8

II. 실용 (가)

1. 제3자의 의의와 취지

1.1 | 제3자는 통상적 이해관계인 수인과 법률이 정한 특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이 이에 관련된 의무상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제 413) / 제3자의 공익성 보호를 위한

1.5 제도가 있다. / K회사에 제 1호의 제정사안이 있어서
그가 참여한 재심요청에 위법이 없다는 문제가 된다.

2. 제정사안 - 제 1호의 이점사안의 재판이 관여했을 때

(1) 리비

1 제정사안으로 자신의 공평 유지와 상충해도 상관없이
보상하려는 것이다. 전심은 하급심을 말한다. 제1호는
중심제1호도 포함된다. 관여한 위법행위와 관여한 항원이
관여함을 말한다.

(2) K회사 경우

1 제정사안은 자신의 재정이 되는 항소판결이 관여한
법원이 다시 재심요청이 관여한 경우는 이점사안인 위법
재판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제 1호가 배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3. 제정의 절차와 효과

1 제정사안이 있는 법원은 소로 직권에서 불러내야 하고,
제정사안이 있는 법원이 관여한 소행위도 무효이다. 단,
판결은 무효가 아니고 확정된 상소, 항소 후 재심 불제기가능하다.

4. 결론 - 위 주장 부정

0.5 K회사는 제정사안 요건으로 그가 관여한 판결 제정사안도 없다.

[실문-2]

I 실문 (1)

1. 실질상의 표시상과 입력상의 차이와 변질의 의미

1.9 표시상은 입력상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지 않으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경우 입력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2 표시만을 변경하는 것이다. / 그러나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표시상으로 변경하면 입력상의 차이와 변질로써, 인식할 만한 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표지를 바꿀 것이 표시상의 인식이 용이된다.

2. 실질상의 표지로 인정되는 자의 동일성 여부

0.5 표지와 표의의 대별 또는 표의의 의미를 대략과 표지로 표의로 동일성 있는 A-표의로 바꿀 것이 입력상의 차이와 변질이다.

3. 표지의 표지 변경 가능

(1) 표지 변경의 의미와 표지 변경

1 표지와 표의를 같은 표지인 것이 변경한 경우 표지 변경 가능한다 (제 2602 조). 제 1항에 계속 표지 변경한 것이 표지 변경한 것, 표지 변경한 것을 표지 변경한 것, 표지 변경한 것이 표지 변경한 것의 의미가 용이한 대역도 표지 변경한다. 표지 변경한 것 (제 2602 조)

(2) 표지를 같은 표지인 것이 변경한 경우'의 의미



1) 권리 주장 대상 수단을 권리 행사에 사용되었다가

권리 행사 관련 사항에, 권리 객체 ~~관련~~ 대상인 것이
보통의 거래 관행이나 관행이 특정 거래에 보아
권리가 ~~행위~~ 주장을 권리 등의 이유로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것이 명백하다 행위 위법 대해 권리 행위
권 | 행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2) 권리 ~~이~~ ~~의무~~ ~~대상~~

0.5 | 권리 ~~이~~ ~~의무~~ ~~대상~~ 행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A 행위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3) 권리 행사

0.5 |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A. 권리 행사~~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4. 권리가 있는 입자의 당사자 변경 가능 여부

(1)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권리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0.5

(2) 특정 공상실용 각종 형태의 소용량이 의의
의미이다.

(3) 전통의 개성법 대상인 해수원의 염도를 (4)
변동성 개성법 다양한 개성법으로 다양한 개성법으로
전통 개성법, 부가하다.

5. 특정 개성

0.5

(2) 특정 개성 개성법 이며,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개성법

9/12

II. 특정 (2)

1. 특정 (2) - 특정 (2) 특정 (2) 특정 (2)

0.5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1)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특정 (2)

(2) 공동출원 의견

공동출원 의견서 (제 64조), 제출한 원고 검토해야 한다.

(제 249조)

3. A출원 경우

(1) ZO1 매수인이면 A에 대한 특허 가능하고, A에 매수인이면
특허권자가 되고 양 특허 인정가능하다. 기타 의견도
가능하다.

특히, A를 매수한 매수인의 공동출원권을 취할 수 있다

2) 특수공동출원인 특허 가능 여부 - 2주.

법원 특허법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 68조 제1항의 공동출원인 특허) 이전 출원서류를

구분하여 받은 특수공동출원인에 특허법 규정은

보장한다.

4/8

~~4/8~~